제931회 신설·강화규제 예비심사 결과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연간 구매목표 개정안 (산업통상자원부)	1.24년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연간 구매목표 설정(신설) ○ 구매대상기업의 '24년도 연간 구매목표를 정함('23년과 동일) – 공시대상기업집단, 자동차대여사업자: 친환경차 22%, 전기·수소차 13% – 일반택시운송사업자: 전기·수소택시 7% – 시내버스운송사업자: 전기·수소버스 6% – 화물차운송사업자: 전기·수소화물차 20%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연간 구매목표 별표	1.비중요
2	비료 공정규격 설정 개정안 (농촌진흥청)	1.부산물비료의 공정규격 설정(신설) ○ '농림부산물 바이오차' 및 '가축분 바이오차'의 공정규격 신설 ▶비료 공정규격 설정 제4조	1.비중요
3	비료생산업의 시설 기타 등록기준 중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비료의 시설기준 개정안 (농촌진흥청)	1.비료생산업 생산시설 기준(신설) ○ '농림부산물 바이오차' 및 '가축분 바이오차'를 생산하는 비료생산업자의 생산시설 기준 마련 ▶비료생산업의 시설 기타 등록기준 중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비료의 시설기준 제2조	1.비중요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4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국토교통부)	1.교통안전관리규정 준수여부 평가주기 축소(강화) ○ 교통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평가 주기를 매 5년에서 매 3년으로 단축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 2.교통수단안전점검 대상 확대(강화) ○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비사업용 화물차를 운영하는 업체를 교통수단안전점검 대상에 포함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6조 3.교통안전 전문교육 종류 등 신설(신설) ○ 교통안전 전문교육 교육대상을 교통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교통시설설치·관리자와 운행제한 단속원으로 하고 교육종류, 시간 등을 구체화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31조의8	1.중요 2.중요 3.비중요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5	가스 · 분말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 (소방청)	1.가스 · 분말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강화) ㅇ 가스 · 분말자동소화장치의 성능 안정성 향상을 위한 시험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신설 또는 강화 ▶가스 · 분말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조,제4조,제5조,제6조,제7조,제8조,제8조의2,제8조의3,제8조의4,제8조의5,제8조의6,제8조의7,제13조,제14조,제15조,제16조,제17조,제25조,제26조	1.비중요
6	호스릴이산화탄소소화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 (소방청)	1.이산화탄소호스릴소화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정(신설) ㅇ 이산화탄소호스릴소화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신설 ▶호스릴이산화탄소소화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전체	1.비중요
7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교육부)	1.대학 입시비리 정원 감축 기준 강화(강화) ㅇ 대입 공정성을 중대하게 해치는 입시비리가 발생한 경우, 1차 위반행위부터 정원을 감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1조의2	1.중요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8	지시압력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 (소방청)	1.지시압력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신설) ㅇ 지시압력계의 성능확인을 위해 진동시험을 비롯한 시험기준 신설 ▶지시압력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5조,제5조의2,제5조의3,제5조의4,제6조	1.비중요
9	소방용 행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정안 (소방청)	1.소방용행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정(신설) ㅇ 소방용 행가의 구조, 외관, 성능 시험기준, 표시사항을 비롯하여 소방용 행가와 관련된 기술기준을 제정 ▶소방용행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전체	1.비중요
10	군인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방부)	1.연금수급자 신상조사 및 자료 제출(강화) ㅇ 국방부장관이 연금수급자 또는 그 가족 등을 대상으로 양육책임 이행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하거나 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26조 2.양육책임 불이행에 따른 퇴직유족급여 감액(신설) ㅇ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퇴직유족급여 제한 신청방법 및 절차, 급여 제한 여부와 감액비율 결정 방법, 양육책임 불이행 판단 기준 등 규정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42조의2	1.비중요 2.비중요 3.비중요 4.비중요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3.제출요청 대상 자료의 범위(강화) ㅇ 국방부장관이 요양기관에 진료 및 진료비 산출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57조 4.부양사실 인정기준(강화) ㅇ 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25세 미만 자녀)가 아닌 경우, 사실상 혼인관계(친생자관계) 존부 확인 판결에 따라 사실혼(친자)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부양사실을 인정하고, 25세 이상 자녀의 경우에는 손자녀·조부모와 동일하게 군인등이 사망 당시 해당 유족을 부양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함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8조	
11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안 (국방부)	1.연금수급자 신상조사 및 자료 제출(강화) ㅇ 국방부장관이 연금수급자 또는 그 가족 등을 대상으로 양육책임 이행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하거나 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19조	1.비중요 2.비중요 3.비중요 4.비중요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2.양육책임 불이행에 따른 재해유족급여 감액(신설) ㅇ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재해유족급여 제한 신청방법 및 절차, 급여 제한 여부와 감액비율 결정 방법, 양육책임 불이행 판단 기준 등 규정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6조의2 3.제출요청 대상 자료의 범위(강화) ㅇ 국방부장관이 요양기관에 진료 및 진료비 산출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60조 4.부양사실 인정기준(강화) ㅇ 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25세 미만 자녀)가 아닌 경우, 사실상 혼인관계(친생자관계) 존부 확인 판결에 따라 사실혼(친자)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부양사실을 인정하고, 25세 이상 자녀의 경우에는 손자녀 · 조부모와 동일하게 군인등이 사망 당시 해당 유족을 부양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함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조	